

## —契約期間과 그 대價—

### ⑬ 業種別 技術導入의 實相 一承前一

더우기 이니시얼을 製品에 按配한 것까지 加算하면 全體의으로 2~4%정도의 토열티가 支拂되는 結果가 된다.

그외에 技術에 관한 料率別 件數는 日本의 경우 別表

### ⑭ 契約期間과 그 대價

기술導入契約의 締結에 앞서 그 期間의 決定은 代價를 결정하는 以上으로 實施權者에게는 重要한 焦點이 된다.

契約締結��에는 國內에서의 競爭이나 輸出上の 障害

別表 (5)

業種	로이열티 無償 폐이먼트 局限	이니시얼 1%以下 1%~3%以下 3%~5%以下 5%~7%以下 7%~10%以下 10%超過								生産量 對料率	計
		4	8	2	11	14	2	2	1		
化學工業 (石油化學, 醫藥品, 農業除外)										12	55
石 油 化 學	3	8	1	5	3	0	0	0	0	9	29
石 油 · 石 炭 製 品	0	6	0	0	0	0	0	0	0	15	21
鐵 鋼 · 非 鐵 金 屬	0	3	0	0	0	1	0	0	0	4	8
金 屬 製 品	0	3	1	5	17	3	3	6	12	50	
一 般 機 械	1	18	1	20	88	35	31	6	51	251	
電 氣 機 械	5	5	6	43	26	5	4	2	29	125	
輸 出 機 條	2	3	1	2	13	3	3	0	14	41	
精 密 機 條	2	1	0	4	1	5	4	1	6	24	
織 織 維 製 品	1	3	0	15	20	1	0	0	9	49	
窯 業 土 石 製 品	0	1	0	3	5	1	0	1	7	18	
플 라 스 틱 製 品	0	4	0	14	8	1	0	0	4	31	
其 他 製 品	0	6	0	25	25	7	4	0	25	92	
計		18	69	12	147	220	64	51	16	197	794

⑤와 같으며 그 가운데서 플라스틱製品과 纖維製品은 로이열티가 2~4%의 것이 많고 精密機械는 5%, 輸用機械과 金屬製品은 4~5%정도가 많은 反面 鐵鋼, 非鐵金屬, 石油關係는 一括買受方式이 많은 편이다.

고무製品, 紙加工品, 家具, 運動用具, 文房具, 玩具 등의 로이열티는 2~5%에 集中되어 있다.

때문에 技術導入을 성급히 서두르다가 實施許諾者의 優越的 態度에 빌려 不必要한 代價支拂, 長期契約을 強要 당하는 일이 없도록 慎重히 對處해야 한다.

따라서 留意할 事項은 技術導入契約期間의 경우만을 생각한다면 代價의 支拂期間, 契約의 有効期間, 殘存期間 즉 契約의 主權利義務가 終了된 후에도 秘密保持義務등의 一定義務가 存續하는 경우의 그 存續期間의 差別 등이다.

## 特許技術導入契約常識<7>

(1) 노우하우의 경우 實施許諾者로서는 契約期間終了後에는 대체로 노우하우의 使用을 認定하지 않으므로 契約製品의 製造는 認定하지 않는다는 結果가 되기 때문에 노우하우契約期間을 길게 정하는 수가 많다.

따라서 妥當한 契約期間의 選定基準은

① 技術의 難易度와 實施權者的 技術消化能力으로  
미루어 當該技術을 習得消化할 수 있는 期間與否

② 技術의 落後化의 可能性

③ 新規의 改良開發技術을 追加的으로 許諾하게 되었느냐의 與否

④ 代價의 妥當性, 契約上의 各種拘束條項 즉 미니멈條項, 類似品의 製造禁止 또는 狹少한 배리터리條項

⑤ 實施權者쪽에 契約解除權의 有無與否등을 우선注意해야 한다.

요즘과 같이 技術의 進步가 急速할 때일수록導入時의 最高技術이라 해도 不過數年에 落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契約條件에 따라서는 實施權者에게 多大한 蒙害가 될수도 있다.

例를 들어 製造를 中止한후에도 契約期間中에는 미니멈을 支拂해야 한다든가 類似製品의 製造禁止條項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또는 第3者가 開發한 新技術을 利用할 수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같은 事態는 契約締結時에는豫測할수 없는 것이라도 實施許諾者와의 信賴關係維持, 技術開發能力이 훌륭한 實施許諾者로부터의 新規改良技術의 繼續의이고 安定의導入 등이 長期일수록 實施權者에게 有利한 경우를 例外하고는 技術을 消化하는데 支障이 없는範圍內에서 短期契約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契約終了時에 다시 檢討한 다음 必要할경우 期間을 延長하는 形式이 바람직하다.

(2) 特許權等의 實施許諾을 隨伴하는 契約은 契約期間을 特許등의 有効期間中으로 함이 常例이다.

特許등의 實施許諾만을 内容으로 하는 契約의 경우에는 이니시얼이나 미니멈의 合意 없이 實施料率을決定하는 것이 이론上契約의 主目的이 되어 特許등을 使

用 한 限度內에서 그에 該當하는 技術料의 支拂義務가 發生한다는 것이 一般的인 생각이다.

그러나 特許라 할지라도 이론上 基本特許와 같이 어찌한 手段을 쓴다 해도 그 使用을 回避할 수 없는 경우는 例外로 하고 二義의 重要性만을 지닌 정도의 特許에 대해서는 技術進步가 빠른 요즘의 時代에는 亦是落後를 避할 길이 없게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特許의 有効期間內의 適當한 時點에서 一旦 契約期限을 끝내고 그후 更新與否를 決定하되 更新해야 할 때에는 代價의 再檢討與否에 대한 選擇權을 實施權者側에 留保하기를 合意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實際 契約에서는 特許와 노우하우가 同時に 許諾될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때에는 그 契約에 대한 特許와 노우하우의 比重을 念頭에 두고 契約期間을 設定해야 한다.

### 15. 契約期間의 實態(日本의 경우)

지난 1968年 4月부터 69年 3月까지 1年동안 日本에서 이론上 甲種技術의 導入認可에 따른 契約件數는 總 1,061件이며 이 가운데 商標만의 契約은 18件, 나머지 1,047件은 特許와 노우하우契約 등이다.

特許의 경우는 契約期間이 7年以下가 245件으로써 全體 554件의 44%에 該當하며 7年以上의 契約은 281件으로 全體의 51%에 該當한다.

特許가 없는 技術은 契約期間 7年以下가 266件으로써 全體의 54%, 7年以上은 178件으로 36%를 占有하고 있다.

特許技術의 경우 期間 5年以下가 比較的 많은데 그理由는 電氣機械關係때문이며 設備建設에 관한 技術提携에서는 建設期間中을 契約期間으로 包含시키는 例가 있다.

無特許技術의 경우에는 特許出願中으로서 特許權이確定되지 않은 것이 包含되기도 한다.